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0.4.7>

<table>
<tr><td colspan="6">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·열람신청서
제 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자동차</td><td>등 록 번 호
(또는 차대번호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사 용 본 거 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동차 소유자의 성명(명칭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자동차 소유자의
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 청
내 용</td><td>발 급</td><td colspan="4">갑부()부, 을부()부</td></tr>
<tr><td>열 람</td><td colspan="4">갑부(), 을부(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용도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제4항 및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10조·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 주소
성명 (서명 또는 인)
주민등록번호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구비서류 : 없음</td></tr>
</table>

신청 안내

<table>
<tr><td>신청하는 곳</td><td>시·도 또는 시·군·구</td><td>처리기간</td><td>즉 시</td></tr>
<tr><td>수 수 료
(수입증지)</td><td colspan="3">·발급: 1건당 300원
·열람: 1건당 100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○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. 다만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○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.
○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.</td></tr>
</table>